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0.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효율적인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을 위해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감시요원의 수당단가 변경(안 제7조)

나. 주변영향지역 기금관리자 변경(안 제13조, 제 17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5. 관련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매립장에 근무하고 일지를 작성하며, 그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며, 수당은 구미시 일용인부임 단가를 적용”을 “폐기물처리 시설에 근무하고 수당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문 생산직 직 종별 평균조사노임(일급) 보통인부단가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여”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시설담당”을 “폐기물처리시설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환경시설관리담당”을 “폐기물처리시설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7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생략) ② 주민감시 요원은 <u>매립장에</u> 근무하고 일지를 작성하며, 그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며, 수당은 일용인부임 단가를 적용 매월 지급한다. ③ (생략)	제7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주민감시 요원은 <u>폐기물처리시설에</u> 근무하고, 수당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조사노임(일급)보통인부단가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여 매월 지급한다. ③ (현행과 같음)	· 폐측법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
제13조(간사 및 수당) ① (생략)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u>환경시설</u> 담당이 된다. ③ (생략)	제13조(간사 및 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u>폐기물처리시설의</u> 업무담당이 된다. ③ (현행과 같음)	· 구미시환경 자원화시설 조성으로 인한 업무 조정
제17조(회계공무원) ① (생략) 1. (생략) 2. 기금출납원 : <u>환경시설관리</u> <u>담당</u>	제17조(회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1. (생략) 2. 기금출납원 : <u>폐기물처리</u> <u>시설의 업무담당</u>	